



의안번호	제호
회의 연월일	2021. . . (제회)

심의
·
의결
사항

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(부령)

제출부서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제3항과 「경찰수사규칙」 제19조제1항이 ‘입건 전 조사’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‘내사’ 용어를 ‘입건 전 조사’로 통일하고,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사유가 혐의없음, 죄가안됨, 공소권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, 입건 전 조사 사건의 경우 이를 모두 ‘내사종결’로 표현하고 있어 종결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바, 불입건 결정 시에도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‘내사’를 ‘입건 전 조사’로 통일(안 제19조, 제20조)
- 나. 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(안 제19조제2항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(이하 “내사”라고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입건 전 조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“내사한”을 “입건 전 조사한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2호의 “내사종결”을 “입건 전 조사종결(혐의없음,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)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3호의 “내사중지”을 “입건 전 조사중지”로 하고, “내사를”을 “입건 전 조사를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4호의 “내사할”을 “입건 전 조사할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5호의 “공람종결”을 “공람 후 종결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의 “내사종결한”을 “입건 전 조사종결한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“내사보고서”을 “입건 전 조사보고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입건 전 조사)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<u>조사</u> (이하 “ <u>내사</u> ”라고 한다)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(이하 “ <u>소속수사부서장</u> ”이라 한다)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	제19조(입건 전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사</u> (이하 “ <u>입건 전 조사</u> ”라 한다)에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사법경찰관은 <u>내사한</u>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	② ----- <u>입건 전 조사한</u>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내사종결</u> :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	2. <u>입건 전 조사종결</u> (혐의없음,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): -----
3. <u>내사중지</u> :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<u>내사</u> 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	3. <u>입건 전 조사중지</u> : ----- ----- <u>입건 전 조사를</u> --- -----
4. 이송: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(해당 기관과	4. ----- ----- -----

협의를 된 경우로 한정한다)에서
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

5. 공람종결: 진정·탄원·투서 등
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~ 마. (생략)

제20조(불입건 결정 통지) ① 사법
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
따라 피혐의자(제19조제2항제2호
에 따라 내사종결한 경우만 해당
한다)와 진정한·탄원인·피해자
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
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
족·형제자매를 포함한다. 이하
“진정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입건하
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
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
에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피혐의자
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
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
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
통지해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
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
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
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
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

입건 전 조사할

5. 공람 후 종결: 진정·탄원·투서 등
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불입건 결정 통지) ①

입건 전 조사종결한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

그 사실을 <u>내사보고서로</u>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 1. ~ 2. (생략)	----- <u>입건 전 조사보고서로</u>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수사심사정책담당관	
연 락 처	02-3150-0133